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문화재에 대한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4조제1항)
-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5조)
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세법」 등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안 제5조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, 안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임.

○ 검토 결과,

-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제 적용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